
티켓링크 1975 씨어터 대관규약

N H N **LINK**

티켓링크 1975 씨어터 대관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엔에이치엔링크 주식회사("운영사")가 운영하는 티켓링크 1975 씨어터(이하 "공연장") 내 시설 및 부대시설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준비', '녹음', '촬영', '철수'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운영사"의 대관 승인을 받아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 ③ "운영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의 범위)

"운영사"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칭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티켓링크 1975 씨어터 공연장
2. 부대시설 : 대기실, 티켓박스, 편의시설, 로비 등 "운영사"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옥내외 공간
3. 연습시설 : 연습실 및 부속 공간

제4조(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운영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운영사"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운영사"의 사정에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③ 수시대관은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잔여 일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관 취소로 인하여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 ④ "공연대관"은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동시에 대관하여 실제적인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⑤ "준비대관"은 기본대관에 부수하여 공연 전에 무대설치 및 리허설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⑥ "철수대관"은 기본대관에 부수하여 공연 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⑦ "연습대관"은 연습시설을 대관하여 공연 실연을 대비한 각종 준비를 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2장 대관 신청, 승인 및 계약

제5조(대관신청 및 제한)

-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사"가 지정하는 서식의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연습실 대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신청서'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만 대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청 기간은 "운영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공연장 등 "운영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대 시설 및 설비, "공연장" 주변 환경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
 3. 과거 "운영사와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 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4. 과거 "운영사와의 대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규약 위반 사례를 범한 단체 또는 개인
 5.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6. "대관자" 의 구성원 또는 조력자의 구성 인력 중 업무 관계상 부적절한 심각한

범죄 이력이 있거나 사회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 발언, 출판 등으로 인해 공공연하게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함된 경우

7.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신앙 활동을 고양할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8. 정치적인 목적,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홍보, 선동, 고무, 결의, 결사 등의 공연 또는 행사
9. 일반적인 공연 보다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판촉, 상품 홍보, 회원 가입 등이 주목적인 영리 행사
10.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공연장에서 수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11.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의 신청

제6조(대관승인기준 및 절차)

- ① 대관승인은 대관 신청인의 사용 내용과 단체수준, 극장 운영 계획과 방침을 고려하여 "운영사"에서 결정하며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공연장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제작 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4. 기타 "운영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 ② "운영사"는 대관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대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단, 공연 대관 이외의 연습실 등 부대시설 사용 신청과 관련한 결과는 신청서와 유선 승인 통보로 이를 대신한다.
- ③ "운영사"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계약금에 대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이 기재된 대관계약서가 개별 통지되며, "대관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 후 계약금(기본대관료의 50%)또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⑤ 단, ④항 관련 계약금 납부를 위해 "운영사"가 발행하는 청구 세금계산서(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 승인을 인지한 시점으로 부터 지체없이 "운영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과 별도로 "대관자"는 "운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일 기준 7일 이내에 계약금 또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요구하는 준비/철수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 ⑦ "운영사"는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자"는 "운영사"의 문서발송일(또는 "대관자"에게 최초로 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요구자료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공연에 필요한 부대시설사용은 대관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스태프회의 직후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기본 대관료의 50%를, 최초 대관일 60일 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운영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납부) 단, 티켓판매를 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개시할 경우 대관료의 전액 또는 잔액을 티켓판매 개시 시점 이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관료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한다.
- ③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시작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공연일로부터 7일 이내 납입된 사용료와 실제 사용료를 대조하여 초과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 ④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즉시 납부한다.
- ⑤ "대관자"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운영사"는 해당 미납금액을 입장권 판매 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입장권 판매 대행 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미납 분을 공제 후 지급한다.
- ⑥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회 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 ⑦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 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자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2.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3. 부대시설, 연습시설 신청 후 사용 30일 전 취소한 경우(해당 사용료 100% 반환)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공연 진행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단, "대관자"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및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장 폐쇄 등) 외에 "대관자"가 임의 판단으로 공연을 중단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9조(승인취소 및 중지, 대관 신청 자격 정지)

- ① "운영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 규약 제5조 ④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상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3.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운영사"의 승인 없이 과도한 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객의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거나 피해가 있을 경우
 5. 공연장 및 주변 시설 및 환경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대관자"가 "운영사"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8.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 ②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운영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운영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대관자"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3. "운영사"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본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본 규약 제9조 ①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10조(사용시간)

- ① "공연장" 대관 시설에 대한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 (오전)09시 부터 (저녁)22시까지
 2. 심야 및 조조 : (저녁)22시부터 익일 (오전)09시까지
- ② "대관자"의 요청으로 연속되는 대관 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 기준 공연 대관 1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대관 기간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6일 공연 1일(월요일)을 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휴관일에는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 ④ 철야 및 조조 시간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할증이 적용된다.
- ⑤ "공연장" 사용 시 '12시~13시', '18시~19시'는 "휴게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 중 "공연장" 사용을 금지한다. 단, 작업 여건, 공연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사"와 "대관자"가 합의한 경우 휴게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 ⑥ 단, 휴게 시간에 "운영사"와 "대관자"가 합의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준비대관 이외의 추가 대관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게 시간 작업 시 오후 준비 대관의 40%의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⑦ "공연대관"은 1회당 3시간 이내의 대관으로 간주하며, 공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한 경우 공연대관료를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1시간 단위별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 ⑧ "공연대관" 시간이 오후 준비 대관 시간(13시~18시)과 저녁 준비 대관시간(19시~22시) 사이에 중첩될 경우 "공연대관" 시간이 더 많이 점유하는 "준비대관" 시간이 "공연대관" 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8시~19시는 저녁 준비대관 시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 ⑨ 공연 시작 시간에 인접한 직전 1시간은 공연 점검 및 관객 입장 시간으로 할애하며, 공연 대관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⑩ 1일 사용 기준 "준비대관" 시간은 비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일 내 오전 준비 대관과 저녁 "준비대관" 사용만 희망할 경우 오후 "준비대관"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권 양도 ·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운영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완료 즉시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②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가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운영사"가 "대관자"를 대신하여 철거 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대관자"는 일체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운영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③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 ④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운영사"의 철거 요청 통지로부터 1일 이내 즉시 철거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대관 계약의 해지)

- ① "대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문서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대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4. 제 3 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5. "대관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② 위 제①항의 경우에 "대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대관자"의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 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단, 아래와 같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한 대관 취소 시 "운영사"는 본 규

약 제8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며, 이외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1. 폭우, 폭설, 태풍, 지진, 폭염, 한파 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재난 주관 기관에서 이동 및 집합을 강제로 제한(권고가 아님)하거나 교통을 통제할 경우
 2. 국가 소요 사태, 사변 등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사전 예고되지 않은 지역 단위 이상 범위의 정전, 단수, 통신 단절 등으로 인해 공연 준비가 불가하거나 당일 공연 진행이 불가한 경우
 4. 자연재해 또는 화재, 테러 등으로 인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용 불가하여 대관 개시일 이전까지 복구가 불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역 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 금지,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제한된 경우
 6. 기타 "운영사"와 "대관자"가 상호 합의하에 인정되는 불가항력의 경우
- ③ 본 조의 ②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란 "대관자"가 "운영사"에 소명하여 여러 객관적 정황에 따라 "운영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대관자" 소속의 당사자나 관계자 또는 조력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회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사안 또는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대관료

제15조(대관료)

- ① 세부적인 대관료는 '별표1'과 같다.
- ② 4주 이상 장기대관의 경우 대관료 납부 방식은 별도 합의에 따를 수 있다.
- ③ "운영사"가 정한 무대 점검일에는 공연을 하지 않으며 대관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 ④ "운영사"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제16조(대관료 할인 및 할증, 가산)

- 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일 경우에는 "공연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 ② 공연 대관이 22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심야 준비 대관료에서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4주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평일 "공연 대관료"에 한하여 10%를 할인 적용하며, 제16조 ①항에 따른 할증은 면제한다.

- ④ 어린이 공연에 한하여 1일 2회 이상 공연 시, 1회 공연 추가 시 평일 추가 "공연 대관"에 한해 "공연 대관료"의 20%를 할인 적용한다.
- ⑤ 할인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⑥ 할인과 할증이 중복될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다.
- ⑦ "연습시설" 일일 사용별 할인,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4주 이상 연속된 사용시 "연습시설" 전체 대관료의 20%를 할인 적용한다.

제17조(대관료 특례)

- ① "운영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 무료 공연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단, 위 항목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운영사와 협의된 실비 개념의 부대설비나 시설 사용료, 인건비 등은 "운영사"에 납부해야 한다.
- ③ 본 조의 대관료 특례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운영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르며, "대관자"는 본 조를 근거로 대관료의 감면을 "운영사"에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관리 및 준수사항

제18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운영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공연, 작업, 연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 소방시설물의 방염 등),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와 "동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와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운영사"(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장치 반입 및 설치가 가능하다.
- ③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④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⑤ "대관자"는 "운영사"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⑥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 파손 시 "운영사"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⑦ "운영사"는 대관 기간 중(연습, 공연준비 및 철수 포함)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운영사"의 고의, 중과실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의 경우, "운영사"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⑧ "대관자"는 "운영사"가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운영사"는 "대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대관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 사항 및 손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운영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 ⑩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 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⑪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에 화분 또는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나 공연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운영사"와 사전 협의에 의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⑫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분장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운영사"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9조(안전교육)

- ① '공연법 제11조의 4(안전교육)'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에 따라 "대관자"는 대관 개시 후 "운영사"에서 진행하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대관 현장에서 이수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위 ①항의 안전교육 중 55분의 교육 시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한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수료증을 대관 개시 전까지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위 ②항에 따른 수료증 제출자는 대관 개시 후 "운영사"에서 진행하는 5분 이상의 안전교육을 대관 현장에서 이수해야 한다.
- ④ 본 조항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 "운영사"는 무대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관자"의 물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 "운영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 ⑤ 본조항의 안전교육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 저학년이 출연하는 대관 건에 대해 "운영사"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대관자"의 설비)

-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운영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운영사"에서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운영사"는 "대관자"의 설치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운영사"는 이 내용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대관일정 변경금지)

-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일정변경, 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운영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대관일정 변경후 이로 인한 대관료 할증 발생시 "대관자"는 대관일정 변경 승인 즉시 추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1차 변경 후 재 변경은 불가하고 이로 인한 대관 취소시 기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가 철거 또는 폐기하며 소요되

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운영사"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 ③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광고·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시 "운영사"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의 제 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사"가 지정한 서식 이외의 광고·홍보물은 공연장에 게시할 수 없으며, "운영사"의 CI는 모든 홍보물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방송 및 판촉 등)

- ①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운영사에 광고, 홍보물 부착/설치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한다.

제5장 입장권(티켓)

제26조(입장권의 발행)

- ① 입장권의 발행은 "운영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티켓 판매 개시 시점 이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 하는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모든 입장권은 전산 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개시일 이전에 "운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 배치도 및 티켓팅 시스템 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③ "공연시설"의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운영사"의 판매대행 수수료에 준하도록 한다.

- ④ 입장권의 모든 판매는 고객들의 편의와 티켓발권 시스템을 위하여 "공연장"의 티켓 운영시스템 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⑥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하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판매시 관련 유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연 시작 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공연 시작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연 중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안내된 시간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야 하며 공연 중 좌석 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6. 휴대하신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 ⑦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운영사 회원 및 관계사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⑧ "운영사"는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 티켓으로 유보하며, "대관자"는 공연 회차별 티켓박스 운영 전까지 해당 유보석을 발권된 형태로 "운영사" 하우스매니저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⑨ 위 ⑧항에 따른 유보석 수량 및 좌석 번호는 다음과 같다.
1. 유보석 수량 : 총 12석
 2. 유보석 좌석 번호 : B구역 10열 1~8 / B구역 22열 1~4
- ⑩ 유보석을 제외한 각 공연장의 판매 가능 좌석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좌석 : 최대 988석
 2. 휠체어석 : 최대 10석
- ⑪ 휠체어석 입장권은 휠체어 이용 관객과 동반인의 입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⑫ "운영사"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객석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진다.
- ⑬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운영사"에서 전담한다.
- ⑭ 위 ①, ②, ⑤, ⑪항의 규약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사"

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운영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⑮ 초대교환권 발행 시에는 "운영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운영사"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⑯ "대관자"의 일방적 귀책 사유로 잘못 발권된 입장권 판매로 인한 대금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환불 과정에서 "대관자"가 환불에 대한 귀책사유를 "운영사"에 있는 것으로 관객에게 공지하거나 인지 시키는 경우 "운영사"는 관련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공연진행

제27조(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8조(공연진행 협조)

- ① 스텝 회의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1.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2주 전까지 "운영사"의 무대기술팀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2. 스텝 회의에는 "대관자" 및 "운영사"의 무대기술팀,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 3. "대관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운영사"의 대관 및 무대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다음과 같다.
 -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운영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의 기술 검토 후 "운영사"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 진행에 관한 책임은 "운영사" 무대감독이 책임을 진다.
 - 3.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시 "운영사"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운영사"의 무대기술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4. "대관자"는 무대기술팀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무대기술관련 자료

- 공연대본, 시놉시스 6부
- 무대장치 평면도 5부
-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5부
- 조명 Plot 2부(외부디자인일 경우)
- 조명기 사용 목록 1부
- 무대기계 상하부 기계사용 계획 3부
- 공연진행 큐시트 2부

나. 공연 세부 안내자료

다.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5부

라. 방염관련 서류(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 섬유기술연구소 등)

③ 공연진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 관리와 공연 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하우스매니저가 담당한다.
3.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운영사"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정한 공연자료수집 및 관계기관의 공연자료요청, 운영사의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공연 설명 목적으로 공연프로그램(발행시) 60부, 공연 OST(발매시) 10EA, 공연DVD(발매시) 5EA, 공연포스터 20장을 발매 후 7 일 이내에 운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 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운영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29조(입장제한)

"운영사"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증상이 명백히 구분되는 자
2. 만취자, 실내 흡연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유효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폭언, 폭행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다중을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기타 "운영사"가 안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 7 장 부 칙

제30조(적용규정)

- ① 본 규약은 운영사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본 규약은 대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운영사는 그 사실을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서면이 운영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정된 규약이 종전의 규약에 같음하여 대관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대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관자는 위 제2항의 통지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운영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주소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운영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가 위 제 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제 2항의 통지가 수취불능으로 반송되더라도 위 제2항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제31조(규약 위반시 책임)

- ①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관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 ② 대관자는 운영사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32조(규약 외 사항)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사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33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규약은 202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대관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대관규약을 적용한다. 단, 해당 "대관자"의 동의(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약을 적용한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운영사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티켓링크 1975 씨어터 공연장, 부대시설, 연습시설 대관료

■ 공연장

(단위:원, 부가세 별도)

장르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어린이공연, 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콘서트	행사, 촬영, 쇼케이스, 강연	
공연대관	2,600,000	3,000,000	3,400,000	3,800,000	4,200,000	4,800,000	
준비 대관	오전	1,350,000	1,500,000	1,700,000	1,950,000	2,100,000	2,400,000
	오후	2,250,000	2,500,000	2,900,000	3,250,000	3,500,000	4,000,000
	야간	1,350,000	1,500,000	1,700,000	1,950,000	2,100,000	2,400,000
	심야	900,000	1,000,000	1,150,000	1,300,000	1,400,000	1,600,000

※ 준비대관 기준 적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오전	오후	저녁
09:00~12:00	13:00~18:00	19:00~22:00

※ 클래식, 국악은 인위적인 음향 확산 없이 공연 가능한 경우 적용한다.

※ 복합 장르로 구성된 경우 대중공연 장르를 준용한다.

※ 미취학 아동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연의 내용이 현저하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어린이 공연으로 간주한다.

※ 기타 장르 적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구분 기준에 따른다.

■ 연습실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대관료	장기대관료 (4주이상 20%할인)	비고
주간(09시~18시)	480,000	384,000	12시~13시 휴게시간
야간(19시~22시)	210,000	168,000	주간 대관시 가능 19:00~22:00
종일사용시	690,000	552,000	

※ 주간 장기 대관자가 간헐적으로 야간 대관을 희망할 경우 할인 없는 일반 대관료를 적용한다.

※ 1주는 총 7일간의 대관을 의미하며 이 중 지정 휴관일 1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장기 대관 중 지정 휴관일 사용 시 해당 일은 대관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대설비

(단위:원, 부가세 별도)

항목	금액	비고
냉난방비	100,000원 / 3시간	무대, 객석 냉난방 시 1일 최대요금 400,000원